

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

□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!

선배·동료 위원님 여러분!

김 호 평 의원입니다.

「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
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.

동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.

□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는 현재 자체 감사의 결과만을 의회에
보고하고 있고, 외부기관에서 감사한 지적사항과 결과는
마땅한 근거규정이 없는 관계로 보고의무가 없습니다.

□ 이에 감사원 등 외부기관이 서울시를 대상으로 실시한
감사현황과 처리결과를 분기별로 서울특별시의회 소관
상임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자 합니다.

□ 보다 자세한 사항은

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,
개정안의 취지를 잘 살피셔서 만장일치로
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